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10

발의연월일: 2024. 11. 13.

발 의 자:이양수・이인선・조지연

박덕흠 • 최형두 • 임종득

배준영 • 조은희 • 김장겸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원 선거에 있어 후보자 등이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일반적인 범위에서 축의·부의금품 제공 행위 등에 대하여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으나,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여 선거일 전 일정 기간 금지되고 있음.

그러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에 우선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화환·화분 제공 행위가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법률 제20179호, '24. 1. 30. 시행)되었고,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 선거시 화환·화분 제공이 가능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도 이를 반영하여 임원 선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53조의2)

법률 제 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2항제1호가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포상 및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화환·화분은 제외한다"를 "화환·화분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제53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	
1. 직무상의 행위	1
가.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	가
체·시설(나목에 따른 조합	
은 제외한다)의 자체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하는 의	
례적(儀禮的)인 금전·물품	
제공 행위(<u>포상을 포함하</u>	(<u>포상 및 화환·</u>
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화분 제공 행위를 포함한
<u>행위는 제외한다</u>)	<u>다</u>)
나.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	나
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	
품 제공 행위(<u>포상을 포함</u>	(<u>포상 및 화</u>
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	환·화분 제공 행위를 포
<u>는 행위는 제외한다</u>)	<u>함한다</u>)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의례적 행위	2

가. (생 략)
나. 후보자가 「민법」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 아닌 사람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
위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
화분은 제외한다)을 제공하거
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 바.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화환·</u>
화분을 포함한다)
다. ~ 바. (현행과 같음)